

(제4-3호)<개정 2019.4.1.>

유 상 증 자 결 정

1. 신주의 종류와 수	보통주(주)	100,000			
	종류주(주)	-			
2. 1주당 액면가액(원)		5,000			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(주)	보통주(주)	6,420,000			
	종류주(주)	-			
4. 자금조달의 목적	시설자금(원)	-			
	운영자금(원)	-			
	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(원)	-			
	기타자금(원)	3,700,000,000			
5. 증자방식		주주배정증자			
6. 신주발행가액	보통주(원)	37,000			
	종류주(원)	-			
7. 신주 발행가액 할인율 또는 할증율(%)		740%			
8. 신주배정기준일시		-			
9.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(주)		-			
10.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(%)		-			
11. 청약예정일	일 반 공 모	시작일	-		
		종료일	-		
	구 주 주	시작일	-		
		종료일	-		
	우리사주조합	시작일	-		
		종료일	-		
12. 납입일		2023.12.27			
13. 신주의 배당기산일		2023.01.01			
14. 신주권교부예정일		2024.01.22			
15. 대표주간사회사(직접공모가 아닌 경우)		-			
16. 신주인수권양도여부		-			
17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23.12.22			
- 사외이사 참석여부		참석(명)	2	불참(명)	-
- 감사 참석여부		-			
18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	미해당			
19. 기타		-			

【제3자 배정의 경우】

제3자배정 대상자	관 계	배정주식수(주)

기재상의 주의

-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.

- 주1) “신주의 종류와 수”, “증자 전 발행주식총수”, “신주 발행가액”, “신주발행가액”, “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”에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
가. 보통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
나. 종류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상기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
- 주2) “증자전 발행주식총수”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증자방식”에는 주주배정증자, 주주우선공모증자,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.
- 주4) “신주발행가액”은 신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가액을,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한다.
- 주5) “1주당 신주배정주식수”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6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)”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